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합4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나20178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합4234 판결

전문

원고A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피고1.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성재열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전병관, 이수진

4. 주식회사 D

5. E

6. F

피고 2, 5,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김유신

변론 종결2019. 1. 11.

판결 선고2019. 2.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제2차적 청구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차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제2차적 청구의 예비적 청구와 피고 B, C, 주식회사 D, E, F에 대한 제2차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제1차적 청구취지]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0. 4. 7. 접수 제6700호1) 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가. 피고 C는 피고 B(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6. 9. 접수 제115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B(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6. 9. 접수 제115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다. 피고 E, F은 피고 B(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소 2017. 3. 30. 접수 제5445호로 마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차적 청구취지]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0. 4. 7. 접수 제6700호2) 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B은 피고 대한민국(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1. 7. 20. 접수 제171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는 피고 대한민국(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6. 9. 접수 제115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대한민국(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6. 9. 접수 제115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라. 피고 E, F은 피고 대한민국(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소
2017. 3. 30. 접수 제5445호로 마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종중인 G 종중 시조의 15세손인 H의 3남 I을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이다.

나. 원고의 시조인 I의 묘소는 구리시 J 임야에 설치되어 있다. 위 I의 묘소를 포함한 구리시 K 내지 L의
각 임야는 1961. 4. 29. G 종중 산하 M파의 종중원인 N, O, P, Q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아래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절차를 거쳐 모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61. 4. 29.소유권자: N, O, P, Q	접수: 1961. 4. 19.원인: 1961. 4. 29. 매매취득자: R, S, T	접수: 1964. 11. 17.원인: 1962. 10. 20. 매매취득자: 원고	접수: 1969. 9. 25.원인: 1938. 2. 10. 호주상속취득자: U	접수: 1970. 6. 5.원인: 1945. 3. 5. 호주상속취득자: V
	3인 지분이전접수: 1974. 2. 7.원인: 1974. 1. 19. 매매취득자: 원고		U 지분이전접수: 1974. 4. 1.원인: 1974. 3. 30. 매매취득자: 원고	V 지분이전접수: 1974. 4. 1.원인: 1974. 3. 30. 매매취득자: 원고

다. G 종중 산하 M파의 종중원인 W은 1913. 11.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사정받았다. 이후 W은 사망하였으나 그 후손이 없거나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에 따라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2010. 4.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45611호로 구리시 X 답 215m²3) 및 Y 전 1,402m²4) 에 관하여 2000. 6.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W이라는 사정명의인이 있으므로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 대한민국이 구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무주부동산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고, 피고 B이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비록 피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73996호)하였으나 위 항소심법원은 2010. 12. 10.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이 상고(대법원 2011다4285호)하였으나 2011. 4. 1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구리시 X 답 215m² 및 Y 전 1,402m²에 관하여 2011. 7. 20. 각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4. 10. 10.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 귀하는 소송에 의해 2011. 7. 국가로부터 Y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먼저 같은 가문의 후손이 소유권을 회복한 사실은 경사스런 일이라 축하드립니다.

3. 귀하는 2011년 이후 귀하가 이전한 토지에 위치한 건물 중 우리 문중의 토지에 속한 약 50m²의 건물 및 담장은 아직 철거나 이전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귀하가 소유권 이전한 건물 및 담장이 있는 구리시 J는 원고의 선산으로 | 전 할아버지 Z 할아버지 AA 할아버지의 묘소가 있으며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 문중에서 시제 및 묘역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AB에 묘소가 있는 AC과 두 아드님의 제단도 설치되어 시제를 매년 모셔오고 있습니다.

5. 귀하 또한 AF의 후손이므로 모든 문제는 서로 만나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므로 연락주시면(종중대표 AG의 연락처, 총무 AH의 연락처) 성실히 대화하겠습니다.

6. 본 종중은 낙엽이 지고 난 2014. 11. 중에 경계펜스 및 산림의 간벌 등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서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 피고 B은 위 내용증명우편과 같이 원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법무법인 AI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법무법인 AI는 2014. 10.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1. 토지 매각 요청

별지 지적도 도면에 빨간부분으로 표시된 귀 종중의 땅(이하 '매각 요청 임야'라 합니다)을 매각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B님은 X 답 215㎡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 X도 귀 종중 임야와 인접하여 있습니다. 매각 요청 임야와 위 X와 교환 후 차액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금액을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2. B님의 건물이 귀 종중의 임야 50㎡ 정도(이 부분은 측량 등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문제도 위 매각제안과 같이 상의하였으면 합니다.

아. 피고 B은 2016. 4. 5. 구리시 Y 전 1,389㎡5)를 피고 C에게 매도하고 2016. 6. 9.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는 2016. 6. 9.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92,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각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피고 B은 2017. 3.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에게 215분의 152.65 지분, 피고 F에게 215분의 62.35 지분을 각 증여하여 2017. 3. 30. 위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A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제1차적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W이 1913. 11. 3.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이래 AJ 등 관리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 왔는데, 그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등기는 실제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바 없음에도 소송에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B과 통모하거나 소송수행자가 직무유기로 피고 B의 점유사실을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획득한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가 점유기간 중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주장할 수 있다. AJ은 1985. 5.경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하다가 2013. 7. 2. 피고 B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였는바, 원고는 AJ을 통하여 1993. 7. 2.부터 2013. 7. 2.까지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7. 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원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 E, F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인 피고 대한민국, B의 각 등기에 터잡아 경로된 등기로서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직접 혹은 피고 B을 대위한 원고에게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여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로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66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B은 피고 대한민국과의 소송을 통하여 획득한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B과 통모하였다거나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가 피고 B의 점유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으며, 위 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 B 명의의 등기가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라든가 기타 다른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1913년경으로부터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 B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은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이후인 2011.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⁶⁾ 그로부터 아직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W에게 사정된 토지로서 무주부동산이라 할 수 없어 피고 대한민국이 구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하였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의 등기임은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자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제2차적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W에게 명의신탁하여 1913. 11. 3. W 명의로 사정받은 것인바, 위 W 또는 W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W의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직접 혹은 W이나 W의 상속인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B, C, D, E,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각 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원고가 W이나 W의 상속인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직접 혹은 W이나 W의 상속인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정 당시 대종중인 G 종중이나 그 소종중인 M파 종중 이외에 별도의 소종중인 원고 종중이 유기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나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A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이고 이를 W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구리시 K 내지 L 임야는 원고의 종중원이 아닌 대종중인 G 산하 M파의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추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대종중인 G 종중이 그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임야에 원고의 시조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W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G 대종중의 족보가 만들어진 1958년 이전에는 원고와 G 종중 사이에 별다른 구별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M파 소속인 W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은 원고가 아닌 G 대종중 또는 그 산하 M파가 그 소유 재산인 위 부동산을 W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② I은 대종중인 G 종중의 시조인 AK의 16세손으로서 그 후손이 없어 M의 손자를 양자로 입적하여 대를 잇게 하였다 하더라도 M파 25세손인 W의 세대에는 I파의 후손들도 번성하였을 것이므로, 만약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이고 사정 당시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이를 M파 소속 종중원인 W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재산을 M파 소속 종중원인 W 명의로 사정받았어야 했던 연유 등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W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을 당시인 1913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직접 혹은 관리인을 통하여 관리해 왔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위 기초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과의 소송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이니 이를 반환하라는 등의 요구를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위치한 건물이 원고 소유의 임야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침범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④ 2012. 7. 1.부터 원고의 총무로 재직한 AH은 피고 B의 대리인 법무법인 AI로부터 위 기초 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후 위 법인 소속 변호사인 AL과 만나 위 법인이 요청한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상의한 바 있다. 그 때에도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이를 반환해 달라는 등의 요청은 하지 않았다.

2) 따라서 원고가 W에게 사정명의를 신탁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는 W 또는 W의 상속인들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주위적 청구 부분).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예비적

청구 부분), 또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B, C, D, E, F에 대한 각 등기의 말소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제2차적 청구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1차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제2차적 청구의 예비적 청구와 피고 B, D, E, F에 대한 제2차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정곤

판사박창희

판사이종훈

별지

-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제6700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제6701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2) 각주 1)과 같다.
- 3)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다.
- 4) 위 부동산에서, 2015. 1. 7. AD 전 13㎡가, 2016. 9. 2. AE 전 656㎡가 각 분할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 5) 구리시 Y 전 1,402㎡에서 2015. 1. 7. 전 13㎡가 AD로 분할되고 남은 토지이다.
- 6)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 E, F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